

어항지정의 기준(제10조 관련)

	국가어항	지방어항	어촌정주어항															
지정 기준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가. 외래어선 이용빈도(연간)</td> <td>110회 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나. 어선 이용빈도(연간)</td> <td>5,000회 이상</td> </tr> <tr> <td>2,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1) 배후인구(어항배후 읍·면·동의 인구를 말한다): 광역시는 4만명 이상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) 어항방문객: 연간 40만명 이상 3)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: 1,100ha 이상 4)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)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과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유선·도선의 운항 횟수: 주당 14회 이상 </td> </tr> </table>	가. 외래어선 이용빈도(연간)	110회 이상	나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5,000회 이상	2,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	1) 배후인구(어항배후 읍·면·동의 인구를 말한다): 광역시는 4만명 이상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) 어항방문객: 연간 40만명 이상 3)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: 1,100ha 이상 4)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)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과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유선·도선의 운항 횟수: 주당 14회 이상	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</td> <td>2,500회 이상</td> </tr> <tr> <td>나. 현지어선 수</td> <td>30척 이상</td> </tr> </table>	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2,500회 이상	나. 현지어선 수	30척 이상	1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·포구일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나. 현지어선 수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	나. 현지어선 수	
	가. 외래어선 이용빈도(연간)	110회 이상																
나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5,000회 이상																	
	2,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																	
1) 배후인구(어항배후 읍·면·동의 인구를 말한다): 광역시는 4만명 이상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) 어항방문객: 연간 40만명 이상 3)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: 1,100ha 이상 4)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)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과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에 따른 유선·도선의 운항 횟수: 주당 14회 이상																		
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2,500회 이상																	
나. 현지어선 수	30척 이상																	
가. 어선 이용빈도(연간)																		
나. 현지어선 수																		
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2.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% 이상을 충족할 것															

※ 비고:

1. 이 표에서 “어선” 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.
2. 이 표에서 “현지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선적을 두고,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3. 이 표에서 “외래어선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,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
4. 이 표에서 “이용빈도”란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15조 및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(출·입항을 기준으로 한다)을 말한다.

다.

5. 이 표에서 “어항방문객” 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.
6. 이 표에서 “주변 양식어장” 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.
7. 이 표에서 “도서” 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,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.
8.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(주민등록 인구수 등)나 확인서에 따른다.